

청원요지서

접수번호	10		접수년월일	2002.12.26
청원인	주소	서울시 중구 신당3동 844 남산타운(아) 30동 1302호		
	성명	김옥자 외 3,124인	주민등록번호	
소개의원	정동일 의원 (새천년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도시관리위원회)			
건명	초등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			
소관위원회	도시관리위원회			
<p>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3동 남산타운아파트 일대는 주택재개발사업완료로 초등학생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근 초등학교의 학습환경 열악과 인근 장충초등학교와 청구초등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중부교육청에 초등학교를 설치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확보를 위해 여러모로 검토한 결과 중구 소재에는 학교용지로 확보할 만한 장소가 없어 용산구 응봉근린공원내 테니스장부지가 적합하다고 판단, 용산구와 협의한 결과 학교결정을 위한 공원용지해제는 불가하다고 하여 재협의중에 있음. ○ 이에 용산구 한남동 726-180번지(응봉근린공원)는 용산구청의 지역이지만 남산타운아파트와 인접되어 있는 곳으로 학교부지로는 최적합지라고 사려되어 이 지역을 학교용지로 확보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2002. 12.
도시관리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의결(처리건수) : 8건(원안동의 7건, 수정동의 1건)
- 안건별 심사결과

의안번호	제출일자	회부일자	상정내역	심사결과
74	2002.11. 4	2002.11. 6	제138회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2.12.27)	원안동의
75	2002.11. 4	2002.11. 6	제138회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2.12.27)	원안동의

의안번호	제출일자	회부일자	상정내역	심사결과
80	2002.11. 5	2002.11. 6	제138회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2.12.27)	원안동의
81	2002.11. 5	2002.11. 6	제138회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2.12.27)	원안동의
86	2002.11. 8	2002.11. 8	제138회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2.12.27)	원안동의
100	2002.12.12	2002.12.12	제138회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2.12.27)	원안동의
101	2002.12.12	2002.12.12	제138회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2.12.27)	원안동의
102	2002.12.12	2002.12.12	제138회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2.12.27)	수정동의

2. 상정일자

제138회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2.12.27) 상정, 의결

3. 제안이유 및 요지

가. 제안이유

별첨내용

나. 주요요지

안전별 내용 별첨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안전별내용 별첨

5. 심사결과

- 서울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계획 절차로서, 도시계획 결정과 변경결정을 실제로 영향을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 결정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시민 이익에 관계되는 결정(변경)안 7건에 대하여 시장 결정안대로 원안동의 하였음.
- 지역형편이나 도시계획결정 내용으로 보아 시장결정안에 특별히 의견 있는 1건을 수정동의 하였음.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번호	74
------	----

제출일자 2002.11.04

1. 안 건 명 :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

2. 제안이유

- 광진구·성동구 동이로 및 광진구 영동대교 북단, 광나룻길의 역사문화미관지구와 중심지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 광진구 구남길 외 3개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신설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구 분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광 진 구 · 성 동 구	1	기정	동 이 로 역사문화 미관지구	장평교~ 성수동2가	90,120	3,755	양측12	'82.4.22	-성동구 편측 3,320m 포함	
		변경	영동대교 북 단	중 심 지 미관지구	영동대교북단 ~노유동 203-5	10,800	450	양측12	'82.4.22	-실효 -성동구 편측 450m포함
		변경	동 이 로	일 반 미관지구	장평교~ 영동대교북단	134,160	5,590	양측12		-실효구간 포함 -연장 오차조정
광 진 구	2	기정	영동대교 북 단	역사문화 미관지구	영동대교 북단 광장주변	3,600	300	편측12	'78.11.17	
		변경	영동대교 북 단	일 반 미관지구	영동대교북단 광장주변 (노유동206-2 ~노유동161-1)	3,600	300	편측12		
	3	기정	광나룻길	중 심 지 미관지구	왕십리 로터리 ~광진교	225,000	7,500	양측15	'82.4.22	
		변경	광나룻길	역사문화 미관지구	모진동199-1 ~구의동253-1	22,500	750	양측15		
				중 심 지 미관지구	왕십리 로터리 ~광진교	202,500	6,750	양측15		존치
	4	신설	구 남 길	일 반 미관지구	구의동245-8 ~구의동546 -10	16,800	700	양측12		
	5	신설	강변역길	일 반 미관지구	구의동 700~ 구의동 213-1	25,680	1,070	양측12		
6	신설	올 림 픽 대 교 길	일 반 미관지구	구의동 199 -85~구의동 584	11,760	490	양측12			
7	신설	광 장 로	일 반 미관지구	구의동 547 -8~구의동 453-1	36,960	1,540	양측12			

4. 주민의견청취결과 : 의견 없음.

5.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의견

- 일반미관지구 신설지정 구간 등에 대하여는 도로의 폭원(20m 이상)을 고려할 때 이견 없음, 다만 고층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광장로 일부구간(테크노마트~현대프라임 아파트 30층~ 현대 3·5단지 18층)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중심지미관지구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광나룻길 일부구간은 주거지역임을 감안할 때 이견이 없으나, 잔여 구간의 중심지미관지구(중전 2종 미관지구)중 주거지역에 지정된 구간에 대하여는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검토 필요

6. 검토의견(전문위원)

- 본 안건은 광진구·성동구 동이로(장평교 - 성수동 2가), 영동대교 북단(영동대교 북단 - 노유동 203-5) 구간에 지정된 역사문화미관지구와 중심지 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광진구 영동대교 북단(영동대교북단 광장주변)의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광나룻길(왕십리로터리 - 광진교)의 중심지미관지구를 역사문화미관지구와 중심지미관지구로, 구남길(구의동 245-8 ~ 구의동 546-10), 강변역길(구의동700~구의동 213-1), 올림픽대교길(구의동199-85~구의동584), 광장로(구의동547-8~구의동 453-1)는 일반미관지구로 신설코자 하는 사안으로
- 2000. 7. 1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에 따라 입안된 동이로, 영동대교 북단 노선의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 광나룻길 중심지미관지구중 일부구간을 어린이대공원 경관보호 및 문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은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지정목적인 사적지·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유지와 무관하며, 서울시의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 방향과도 배치되는 부분은 있으나 대공원의 경관보호와 문화적 환경 조성 측면에서 변경지정의 실익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도시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결정 절차의 하나인 주민의견청취는 2개 일간지에 14일 이상 공람 공고하여 의견을 접수받아 60일 이내에 도시계획안에 대한 반영여부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으나, 개별통보가 생략됨에 따라 본 건과 같이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도시계획안에 대한 공람 공고내용을 인식하기가 현실상 어려운 실정인바, 보다 나은 이해관계인의 참여방법과 주민홍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신설구간인 구남길, 강변역길, 올림픽대교길, 광장로 구간은 “서울시의 미관지구재정비방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자치구에서 입안한 사항인데 도로의 폭원(20m 이상)을 고려할 때 일반미관지구의 지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고층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광장로의 일부구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사료되고 또한 광나룻길 일부 구간중 일반주거지역인 구간은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일반미관지구로의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

7. 심사결과 : 원안동의

-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번호	75
------	----

제출일자 2002.11. 4

1. 안 건 명 :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2.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학교) 일부해제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조건부 가결사항인 일반주거지역 등의 세분화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구 분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강서구 등촌동 564-1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2,902.3	12층 이하 용적률200%

4. 주민의견청취 결과 : 의견 없음.
5.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
 - 도시계획시설(학교) 일부해제에 따른 2002년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5.1)심의결과 가결된 사항으로서 도시계획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이견 없음.
6. 서울시 도시계획과 의견
 - 2002년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5.1) 심의시 해당부지에 대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방안을 차기위원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학교) 해제되었고,
 - 2002년도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5.22)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세분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한 사항이며
 - 우리 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협의대상지 조정기준)」에서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제2종의 범위 내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는바, 별도 이견 없음.
7. 검토의견(전문위원)
 - 본 안건은 강서구 등촌동 564-1번지 2,902.3m²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일부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로 변경 결정하는 사안으로
 - 동 부지는 일부에 가설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는 나대지로서 동측으로는 등촌로에 접하여 있고 북측으로는 임광아파트(17층)가 남측으로는 그레이스 아파트(14층)가 건립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상 학교용지로 지목이 대지여서 매수청구 대상임.
 - 동 부지는 당초 대일고교 학교시설 용지였으나 학교측에서 재정형편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토지구로부터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됨에 따라 장기 민원을 해소코자 시교육청으로부터 해제 요청되어 2002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2002. 5. 1)심의결과, 본 토지에 대한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를 하는 조건으로 가결된 사항으로
 - 도시계획시설(학교)에서 해제된 동 토지에 대하여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토지이용을 위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변경은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됨.
8. 심사결과 : 원안동의
 -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번호	80
------	----

제출일자 2002.11. 5

1. 안 건 명 :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
2. 제안이유 : 중랑구 신내동 278 일대의 교차로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광장)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결정 (신설)	광 장	교통광장	중량구 신내동 278일대	0	증)29,519	29,519	교차로 설치를 위한 교통광장 신설

4.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검토결과 : 별첨 검토서 참조

5. 도시계획상입기확단 의견 : 이견 없음.

6. 검토의견(전문위원)

- 본 안건은 중량구 신내동 278번지 일대 교차로 설치를 위한 교통광장 29,519m²를 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 동 지역은 신내택지구 개발 및 북부간선도로의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능산길 주변의 교통정체 및 신내I. C ~ 퇴계원간 도로확장시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로 혼잡한 구리I. C의 교통량이 신내I. C로 분산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망 구성 및 주민통행 편의를 위해 현 교차로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 '98. 12 광역도로로 지정, '99. 2. 27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되었으며 2000. 6 ~ 2001. 4 신내 I. C ~ 구리시계간 도로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하여 2002. 6. 11 도시계획시설(광장)을 시장이 입안하여 결정 요청하였음.
- 광장에 편입되는 토지는 총 95필지 29,519m²로 사유지가 46필지 17,194m² 이고 국·공유지가 49필지 12,325m²로서 2002년도 예산으로 25억원, 2003년도에 53억5천만원, 2004년 53억5천만원, 총 132억원(시비 및 국비 각 50%)을 투입하여 시공할 예정으로 그 동안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북부간선도로와 서울방향의 능산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불완전 크로바 형식의 광장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됨.
- 다만, 동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취락지구지정을 검토한 지역이므로 도시계획결정과 함께 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이 필요하고 관련 부서와의 농지전용허가 협의를 통한 동의가 필요하며 수용되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이축권 부여, 적정 보상 등 주민들의 민원해소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7. 심사결과 : 원안동의

-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 검토서

의견 제출자 (주소 및 성명)	제출의견	주관과 검토의견 (도로계획과)	비고
도시계획과	취락지구 지정을 검토한 지역으로 도시계획결정과 함께 이주대책 수립필요	사업시행시 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 추진	사업시행시 반영
중량구	도시계획결정전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 동의여부를 확인후 결정	관련부서에 농지전용허가 협의후 동의시 결정	추진중

의견 제출자 (주소 및 성명)	제출의견	주관과 검토의견 (도로계획과)	비고
서초구 서초동1444의7 서초 제4차 우성(아)3-605호 우 종 일	'89년도에 취득한 토지와 주택을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완화된 시점에서 교통광장 신설 건 절대반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교차로를 개선하는 공익사업임을 지속적으로 이해설득	미반영
중랑구 망우동183 해동빌딩 6층 신 석 윤	1. 신내동 75번지 토지가 전체 수용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삼각형으로 잘려 못쓰게 되니 이취권부여 요망 2. 설계상 도로 이외의 공간이 너무 많이 잡혀 있음. 3. 꼭 필요한 도시계획이라면 빠른 보상과 보상액 현실화 요망	교차로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를 편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보상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감정평가실시후 보상하겠음.	보상시행 등 사업시행시 반영
서초구 반포동 32의5 한양(아) 5-605호 김명수 외4인	1. 계획중인 교통광장이 도로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 신내동 51-1의 4필지의 토지가 많이 포함되었으니 기술적으로 검토요망 2. 10년전 검문소 및 도로확장으로 천여평, 작년에는 소방도로 일부를, 이번에는 광장으로 천여평이 들어가 나머지 6~700평으로는 배발경작이 불가능하니 재검토 요망	광장조성에 필요한 부지에 한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계획되었음.	미반영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번호	81
------	----

제출일자 2002.11. 5

- 안 건 명 :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
- 제안이유 : 서대문구 홍제동 322-11 홍제공무원아파트 부지를 연결된 안산공원에 편입 결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
- 주요요지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공 원	도 시 자연공원	서대문구 홍제동 322-11	2,087,511.9	증)1,193	2,088,704.9	고지대 나홀로 아파트 부지 연접공원에 편입

4. 주민의견 청취 결과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천형범	- 충분한보상요구(5천만원), - 서대문구 근처로 이주요망, - 특별분양가 요구	사업시행시 감정가격에 의한 보상 및 이주대책 추진
박남훈	- 보상 및 이주지역에 대한 협의요구	

5.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 : 의견 없음.

6. 검토의견(전문위원)

- 본 안건은 서대문구 홍제동 322-11번지 홍제공무원아파트부지 1,193㎡를 연결한 안산공원에 편입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 동 부지의 홍제공무원아파트는 1970년도에 건립되어 30년이 지난 노후화된 아파트로 현재 36세대(14평형)가 입주하고 있음.
- 2001년도 4. 4일 개최된 홍제시민아파트 부지를 연결된 안산공원에 편입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해발 약 115m 고지대에 건립된 나홀로 공무원아파트 부지도 안산공원에 편입을 검토하도록 수정가결된 사항임
- 안산공원에 편입되는 토지는 1필지 1,193㎡로 시유지이며 2003년도에 16억5천만천, 2004년에 3억5천만원, 총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도시공원확충을 위한 공원변경결정은 보상 및 공사를 위한 투자재원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됨

7. 심사결과 : 원안동의

-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번호	86
------	----

제출일자 2002.11. 8

1. 안 건 명 : 도시계획시설(철도) 입체구역 특정

2. 제안이유 : 동대문 제기동 892-72번지 일부(지하철1호선 제기동 정류장 지하구간)를 철도입체구역 특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안)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폭(m)	연장(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도시철도	제기동 정류장	용두동 및 제기동	18	210	3,600	'72.12.23 (건고시535)	
변경	도시철도	제기동 정류장	용두동 및 제기동	18	210	3,600		토지일부 입체구역특정

○ 철도 입체구역 특정

구분	입 체 시설명	입체구역 특정대상	위 치	입체구역 특정				비고
				폭(m)	길이(m)	높이(m)	면적(m ²)	
신설	도시철도	제기동정류장 지하구간	동대문구 제기동 892-72번지 일부	11.2 ~ 18	54.2	지하 0~30	879.3	지상영구 공작물 설치금지

4. 주민의견청취결과 : 의견 없음.

5. 도시계획상입기확단 의견 : 이견 없음.

6. 검토의견(전문위원)

- 본 안건은 동대문구 제기동 892-72번지 일부를 폭 11.2-18m, 길이 54.2m, 높이 지하 0~30m, 면적 879. 3㎡의 입체구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하는 사안으로
- 동 토지는 '72. 12. 23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되어 지하철1호선 제기동 정류장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토지로서, 철도청에서는 1982년 인접 토지소유자인 (주)미도파에 지상부분을 매각하고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여 지상부분은 미도파백화점 부지로 지하부분은 제기동 정류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 2002. 7. 25(주)미도파에서 현재의 백화점 건물을 대수선 후 증축하고자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한 입체구역 특정을 요청함에 따라 2002. 9. 25 동대문구청장이 도시계획 입안하고 결정 요청한 사항으로
-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의 입체구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 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므로
- 토지 소유자인 철도청 및 시설의 관리자인 지하철공사와 사전협의 완료됨에 따라, 동 토지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제기동 정류장 부분에 한하여 입체구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 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사료됨.

7. 심사결과 : 원안동의

-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번호	100
------	-----

제출일자 2002.12.12

1. 안 건 명 :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

2. 제안이유 : 서대문구 가좌로, 안산순환도로와 마포구 강변북로, 토정길, 중구·용산구의 장충단길의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구분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면적 (㎡)	연 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서 대 문 구	1	기정	가좌로	역사문화 미관지구 (중전4 중)	연희동89-12 ~ 홍은동338-146	37,080	1,545	양측12	'82.4.22
		변경	가좌로	일반미관 지구	연희동89-12 ~ 홍은동338-146	37,080	1,545	양측12	-
	2	기정	안산순환 도로 (궁동근린 공원내)	역사문화 미관지구 (중전3 중)	사천교~연희동 (궁동근린공원내)	48,000	2,000	양측12	'82.4.22
		폐지	안산순환 도로 (궁동근린 공원내)	-	사천교~연희동 (궁동근린공원내)	48,000	2,000	양측12	-
마 포 구	3	신설	강변북로	역사문화 미관지구	성산대교(상암동 1537)~상암동시 계(상암동1566)	82,800	3,450	양측12	-
	4	기정	토정길	역사문화 미관지구 (중전4 중)	마포동~합정동	78,432	3,268	양측12	'82.4.22
		변경	토정길	일반미관 지구	마포동34~합정 동185	78,432	3,268	양측12	-
	5	기정	강변북로	역사문화 미관지구 (중전4 중)	현석동114~177간	8,640	360	양측12	'82.4.22
		변경	강변북로	역사문화 미관지구	현석동116~150간 현석동164~177간	6,960 1,680	290 70	양측12 양측12	- -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 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중구·용산구	6	기정	장충단길	역사문화미관지구 (중전3종)	한남동~힐탑~광희동	28,800	1,700	양측12	'82.4.22	-도로폭원 축소결정에 따른 변경
		변경	장충단길	역사문화미관지구	한남동~힐탑~광희동	36,000	1700	양측12	-	-중구구간 편측 400m(중전집단 3종) 제외

4. 주민의견청취결과 : 의견 없음.

5.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 : 이견 없음.

6. 검토의견(전문위원)

- 본 안건은 서대문구 가좌로(연희동 89-12 ~ 홍은동 338-146), 마포구 토정길 (마포동 34 ~ 합정동 185) 구간에 지정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 서대문구 안산순환도로(사천교~연희동) 폐지에 따른 역사문화미관지구 폐지, 마포구 강변북로(현석동114~177간) 구간의 역사문화미관지구를 도로 폭원 및 선형변경에 따른 위치조정, 강변북로(성산대교~성암동시계)구간에 역사문화미관지구 신설, 중구·용산구 장충단길(한남동~힐탑~광희동)구간의 역사문화미관지구를 도로폭원이 축소결정됨에 따라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 2001. 7. 1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에 따라 입안된 서대문구 가좌로, 마포구 토정길 구간의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 도로폐지, 도로선형변경, 도로폭원 축소결정 등 도로계획변경에 따른 서대문구 안산순환도로, 마포구 강변북로(현석동114 ~ 177간), 중구·용산구 장충단길 구간의 역사문화미관지구 위치조정과, 한강변의 미관 및 경관을 고려하여 강변북로(성산대교 ~ 상암동시계) 구간의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됨.

7. 심사결과 : 원안동의

-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번호	101
------	-----

제출일자 2002.12.12

1. 안 건 명 : 도시계획시설(노량진근린공원) 변경결정

2. 제안이유 : 동작구 본동 산 7-2번지 일대 107필지를 노량진근린공원에 편입결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 원	근린공원	동작구본동산 7-2번지일대	366,110	증)8,850	374,960	- 보라매근린공원 일부 해제 대체부지 지정 : 4,073m ² - 사육신묘지공원 일부 해제 대체부지 지정 : 4,777m ²

4. 주민의견청취결과 : 의견 없음.

5.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 : 이견 없음.

6. 검토의견(전문위원)

- 본 안건은 동작구 본동 산 7-2번지 일대 107필지 8,850m²를 노량진근린공원에 편입결정하는 사안으로
- 동 부지는 노량진근린공원과 상도터널 상부지역에 연결되어 있는 수림이 양호한 지역으로 토지소유자는 국·공유지가 105필지 8,754m²이고 사유지는 2필지 96m²임 .
- 2002년 제4차(2002. 5. 1) 및 제7차(2002. 9. 6)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조건부 가결된 노량진소방파출소가 위치한 사육신묘지공원 일부해제(1,501m²) 및 보라매병원 증축을 위한 보라매근린공원 일부해제(2,975m²)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와 노량진근린공원과 연결된 상도터널주변의 잔여지(2,580m²) 전체를 공원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조건부 가결된 대체공원 확보에 대한 도시계획 절차이행과 토지이용의 효율화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도시공원 확보차원에서 공원으로 편입 결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됨.

7. 심사결과 : 원안동의

-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번호	102
------	-----

제출일자 2002.12.12

1. 안 건 명 : 도시계획시설(공원, 수도)결정 및 변경결정

2. 제안이유 : 종로구 구기동 139-10번지의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대체부지인 종로구 구기동 139-16번지에 근린공원과 수도를 중복결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폐지)	공 원	어린이	종로구 구기동 139-10번지	1,681	감)1,681	0	- 어린이공원은 해제 하고 대체공원인 근 린공원 신설 - 수도용지는 지하로 근린공원과 중복결정 (수도 : 지하 1,533m ²)
결정 (신설)	공 원	근 린	종로구 구기동 139-16번지	0	증)1,974	1,974	
변경	수 도		종로구 구기동 139-16번지	1,533	0	1,533	

4. 주민의견청취결과 : 의견 없음.

5.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 :

- 구기어린이공원을 해제함에는 동의하며
- 대체공원인 139-16번지는 수도용지이면서 경사지로 근린 공원으로 이용되기에는 부적절한 위치이며, 수도용지의 경우 지상화는 공공 공간화 되어 있어
- 기존의 자연적 지형 및 경관과 보행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구기동 139-19번지와 -20번지의 필지를 대상으로 공원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

6. 서울시 및 종로구 의견

<시설계획과>

- 시설의 중복결정시는 각각의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범위설정 및 중복여부 표기

<공원녹지과>

- 대체공원 예정지는 급경사지이고 수도 시설인 지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시민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 대체공원을 지정

<종로구>

- 대체공원 연결부지인 구기동 139-17, -18호를 포함하여 공원결정

7. 검토의견(전문위원)

- 본 안건은 종로구 구기동 139-10번지 1,681㎡의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종로구 구기동 139-16번지 1,533㎡ 수도용지는 지하로 지상 1,974㎡를 대체근린공원으로 중복 결정하는 사안으로
- 구기동 139-10번지는 '79. 5. 21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지인 외교관공관단지를 목적으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된 시유지로서
 - 2001. 11. 30 통일부에서 서울시로 남북회담사무국 청사이전 부지매입 협의에 따라 동 토지를 포함한 구기동 139-9, -11, -12 총 4필지 2,130평에 대하여
 - 2001. 12. 14 시의회에 매각승인을 득하여 2001. 12. 28 서울시는 통일부로 동 토지를 제외한 3필지를 매각하였으며
 - 2002. 2. 16 시유지 매각관련 동 토지에 대한 대체공원 지정 검토방침에 따라 입안된 것으로 현재 종로구청의 자재창고로 사용되고 있음.
- 구기동 이 부근 일대는 1997년도에 주거단지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이북5도 청사, 이라크 대사관부지, 남북회담 청사부지, 러시아 대사관부지 등 공공청사가 주로 들어서고 주택으로는 현대빌라(12세대)만 건립되어 있어 어린이 공원의 필요성이 감소하여 해제의 실효성은 있다고 사료되나
- 대체공원 부지인 구기동 139-16번지는 '79. 5. 21 도시계획시설 수도용지로 결정되어 지하로 배수지가 설치되어 있고 지상은 수목으로 조성되어 있는 급경사지여서 공원시설물 설치가 어렵고 근린공원으로 이용되기에는 부적절한 위치임.
- 따라서 서울시에서 시유지 매각에 따른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어린이공원을 해제하고 대체공원부지로 연결한 수도용지에 근린공원과 중복 결정하는 것은 지형여건상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지하구조물로 인하여 공원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판단됨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종로구청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시유지매각을 위한 면피성 대체공원지정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기존의 자연적지형 및 경관과 보행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민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 대체공원을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8. 심사결과 : 수정동의

- 대체공원 연결부지인 구기동 139-17, 139-18호를 포함하여 공원결정 함이 바람직함.